

[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세법 해설-나형]

- 김재상 세무사/교수

1. ② 기업회계의 존중은 세법적용의 원칙에 해당한다.
2. ②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사대 10만원, 출산수당 10만원,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총 40만원이다.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다.
3. ④ 국세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며,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.
4. ④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.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.
5. ②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요건 사유이다.
6. ④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.
7. ③
 - ① 제조업과 관련되지 않은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.
 - ② 수선비 합계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액수선비로 전액 필요경비를 인정한다.
 - ④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본인과 근로자의 회사부담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8. ④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.
9. ②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(천재지변.화재 등의 사유로 손상된 경우 등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에는 해당 손상차손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한다.
10. ② 결손금 소급공제액은 Min[8천만원, 4천만원(한도)] 이므로, 산출세액 4천만원과 과세표준 3억원을 계산하기 위한 최대 소급공제액은 2억원이다.
11.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

12. 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.

13. ④

①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진다.

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(소득처분 및 세무조정) 또는 제22조(출자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 한다.

③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(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)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.

14. ① 80%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가, 다 이다.

15. ③ 가, 다, 르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,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16. ② 손금불산입액은 과태료 150만원, 납부지연가산세 100만원, 주세 미납액 550만원, 손해배상금 300만원(=450만원×2/3) 총 1,100만원 이다.

17. ④ 외국환은행은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(강제규정).

18. ③

가.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.

르.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19. ①

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을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
③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.

④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.

20. ②

① 건축자재의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전대가인 3,800만원이다.

③ 수출시 과세표준은 5월 25일 2,300만원 환가액과 6월 1일 선적한 6,780만원(=60,000달러

×1,130원)의 합계액인 9,080만원이다.

- ④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저가공급시 과세표준은 시가인 300만원이다.

21. ②

-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소정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액(예정고지세액)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.
- ③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
- ④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.

22. ① 관할 세무서장이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.

23. ①

- ② 사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③ 법인이 아닌 단체 중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.
-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.

24. ③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25. ③

- ① 체납자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.
- ②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.
- ④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.